

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-5번지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(변경) 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. 6. 10.

고 양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 - 나. 명 칭 :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
 - 다. 인가일 : 2025. 6. 9.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-5번지
 - 나. 면 적 : 3,547.0㎡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 - 가. 착 수 예 정 일 : 미정
 - 나. 준 공 예 정 일 : 미정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 - 가. 조 합 명 칭 :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(조합장 김현주)
 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2, 동해빌딩 307호
5. 조합설립(변경)인가 내용
 - 가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

변경 전	가. 종류 : 소규모재건축사업 나. 명칭 :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변경 후	가.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 나. 명칭 :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

2) 조합 정관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
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	가로주택정비사업 (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명칭 변경 외 변경 없음)

3) 조합임원 변경내역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조합장	1명	1명	연임
감 사	1명	1명	연임
이사	4명	4명	▶ 사퇴(-1명), 보궐선출(+1명) - 2024년 11월 9일 정기총회에서 보궐선출

4) 조합원명부의 변경

▶ 조합원 수

변경 전(2023. 6. 7.)	변경 후
66명	70명

6.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

가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의3(행위제한 등)에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 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. 다만, 법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나. 행위제한 구역 : "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"과 동일

다. 행위제한 대상 :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의 분할·합병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7. 지형도면은 게재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